

의안번호	2213718
의 퇴 인	정태호의원
회 답 일	2025.11.3.
추 계 번호	25D5704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제19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국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1항)	의무규정
2	제21조(사무처의 설치)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처를 둠(제1항)	의무규정
		사무처에는 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함(제2항)	의무규정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3	제23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연구센터”라 함)를 설립함(제1항)	의무규정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함(제4항) 1.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한 연구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지원 4.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의무규정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제5항)	재량규정
4	제25조(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함)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5	제27조(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회)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둘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6	제32조(지속가능발전기금의 설치)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함)을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4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 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7. 기금을 운영하여 생긴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의무규정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7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함 1.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전환전략 수립 지원 및 실증사업 지원 7.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용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의무규정
8	제34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여야 함	의무규정
9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용·관리하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제2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7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둠(제4항)	의무규정
10	제38조(지속가능발전 주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년을 지속가능발전주간으로 하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주간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제17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제19조(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지속가능 발전 추진 기구	미대상 -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정수를 “6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축소하는 것이므로, 회의참석수당 등 재정소요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2	제21조(사무처의 설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제23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4	제25조(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5	제27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		
6	제32조(지속가능발전기금의 설치)	지속가능 발전 기금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7	제33조(기금의 용도)		
8	제34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9	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10	제38조(지속가능발전 주간)	지속가능 발전 행사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가.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 설치·운영(안 제21조·제23조·제25조 및 제27조)

□ 안 제21조¹⁾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지원조직인 사무처를 설치하고, 사무처에는 처장(정무직공무원)과 그 밖의 직원을 두도록 하고 있음

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1조(사무처의 설치)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재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는 그 지원조직으로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을 두고 있는데, 추진단에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고 단장은 경제조정실장이 겸임하고 있음
- 개정안은 추진단을 사무처(장관급 또는 차관급 기관)로 개편하는 내용으로, 지원조직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사무처의 조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사무처의 규모, 직급별 정원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안 제23조²⁾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조제4항³⁾은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무조정실은 2026년부터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며,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는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3조(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연구,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구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센터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가기본전략 및 중앙추진계획의 수립·이행을 위한 연구
2.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3.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연구·개발·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 연구·지원
4.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지원
5. 그 밖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연구센터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7조(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를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위원회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효율적인 구축·운영과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방법 및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특수법인 형태의 연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으로, 연구센터의 설립·운영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추가재정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연구센터 설립의 법적 근거 외에 조직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하고 있지 않아, 현시점에서 연구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 안 제25조 및 제27조⁴⁾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지방위원회 간 위원장과 책임관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

나. 지속가능발전 기금 설치·운영(안 제32조·제33조·제34조·제36조 및 제38조)

- 안 제32조⁵⁾는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조(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과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필요한 정보의 교류 및 관련 정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장 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은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는 협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 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회는 구체적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2조(지속가능발전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지속가능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34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의 차입금

6.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豫受金)

7. · 8. (생략)

③ (생략)

- 안 제34조는 매 회계연도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1천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기금에 전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4년(2021~2024년) 그 수납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수납현황: 2020~2024년

(단위: 백만원, %)

구분	징수결정액(A)	수납액(B)	수납률(B/A)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2021	16,631,175	16,598,390	99.8	23,661	9,124
2022	11,141,720	11,116,375	99.8	21,951	3,395
2023	10,868,299	10,843,590	99.8	17,652	7,057
2024	11,408,670	11,389,082	99.8	13,804	5,784

자료: 기획재정부 소관 2025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Ⅱ-1)

- 안 제33조6)는 지속가능발전기금을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지원, 지속가능발전 정보망의 구축·운영,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국제협력,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등에 사용하도록 함
- 개정안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지속가능발전기금의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기금사업의 규모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기금의 재원이 되는 정부출연금, 다른 회계나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정보가 없음
- 따라서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속가능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6)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한 기술혁신,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2.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지속가능발전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
3.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의 구축·운영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5.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6.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지역전환전략 수립 지원 및 실증사업 지원
7. 지속가능발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8.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0.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11.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